

인도네시아 신문평의회

I. 인도네시아 언론현황

인도네시아는 현재 84 개의 일간지, 109 개의 주간지 및 32 개의 격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 또한 517 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1 개의 TV 방송국이 있으며, 1937 년에 설립되어 1962 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ANTARA 통신사와 1966 년에 설립된 KNI 통신사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744 년에 최초로 신문이 등장하였으나, 순수한 인도네시아인의 신문은 1907~1910 년에 발행된 메단프러자지와 다르모콘도지이다. 그러나 1942 ~ 1945 년의 일본점령하에서는 인도네시아..... 「: 신문발행이 금지되었다.

1949 년 독립 후 1956 년까지의 기간에 언론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은 다수의 정치세력과 인종집단을 대변하였다. 1956 년 수카르노 집권후 교도민주주의 이념에 의해 신문사의 수와 보급률은 반으로 감소되었다. 1966 년 수하르토집권 후 초기에는 언론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듯하였으나, 1974 년 정치위기에 이은 언론탄압사태가 있었고, 1978 년에는 7 개 일간지가 정간되고 240 명의 언론인이 체포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언론법은 1966 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언론에 관한 기본 규정」이라 명명된 이법은 인쇄매체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공식적 법률이다. 이 법은 1982 년 절대적 조항이 삭제되고, 수정조항이 첨가되는 등 개정되었으나 법의 기본정신은 수정되지 않았다.

신문평의회는 1966 년 언론법에 의해 국가언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신문평의회에 관한 조항은 1982 년 언론법 개정시에 위원을 17 명에서 25 명으로 증 원하였고, 정부가 언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신문평의회 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1984 년에는 정부규칙 제 1 호에 신문평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II. 신문평의회 설립 및 구성

인도네시아 신문평의회는 1966 년 제정된 최초의 언론법, 「언론에 관한 기본규정」(The Basic Principles of Of The Press), 제 3 장 제 6 조, 제 7 조 규정에 의해 국가언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설립된 비구조적 협의체이다. 1982 년 언론법 개정시에 그 위원을 17 명에서 25 명으로 증원하였고, 정부가 언론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할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1984 년에는 정부규칙 제 1 호에 신문평의회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신문평의회는 정부가 건전하고 활동적인 국제언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하며, 또한 정부가 판차실러 (1945 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의 건국 5 원칙)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언론을 성장시키려 할 때 이를 지원한다.

평의회는 기자협회 8인, 신문발행인협회 대표 6인, 신문그래픽협회 대표 1인, 광고협회 대표 1인, 정부대표 5인, 사회단체대표 4인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보장관이 의장이 된다.

평의회위원 임기는 3년이며 공보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을 승인한다. 위원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이어야 하며, 판차실러를 신봉하고, 인도네시아 국가목표에 반하는 운동에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언론법 제 2조, 제 3조에 규정된 언론의 지위와, 기능, 임무를 완전히 이해하며, 경험과 덕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평의회는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를 두며, 평의회를 기술적이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보부언론그래픽국 내에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평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지식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III.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장 지위, 임무, 기능 및 권한

제 1 조 정부 규정에 평의회로 명명된 신문평의회는, 건전하고 활동적인 국가 언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과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구조적 협의체이다.

제 2 조 신문평의회는 판차실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 언론을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한다.

제 3 조 신문평의회는 제 2 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공보장관이 언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한다.
2. 판차실러에 기초한 책임있는 언론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정부, 언론, 사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공보장관이 저널리즘, 신문경영, 신문그래픽, 광고, 특별히 인쇄매체 광고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설립을 포함하여 저널리즘과 신문경영의 이상적인 모범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한다.
4. 정부가 언론을 위해 제공한 편익시설의 효용성을 공보장관이 평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5. 저널리즘, 신문, 광고, 그래픽이 그들에 부과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지 감독한다.
6. 국가언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타의 제반 노력을 한다.

제 4 조 신문평의회는 제 2 조, 제 3 조에 규정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보장관이 언론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준비하고 입안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2. 공보장관이 넓은 의미에서 언론발전에 관계된 정책의 입안과 그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언을 한다.

3. 판차실러에 기초한 책임있는 언론자유이론의 이해와 이의 준수를 주장하는 구조 (71,eFrame Work Of Affirming)에서 정부, 언론, 사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편화하며 제도화한다.

4. 인도네시아에서 판차실러를 지지하는 언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신국제정보질서의 창조를 위하여, 외국언론기관과의 관계를 확립한다.

5.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데 있어 언론과 관계된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한다.

6. 정보의 교환을 위해 정부와 사설기관과의 협의를 주선하고,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활동을 도모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 언론, 사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견해를 제안한다.

7.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성장, 발전 및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활동을 한다

제 2 장 위원과 총 구성원

제 5 조

1. 평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은 공보장관이다.

(2) 부의장은 신문평의회위원 가운데서 평의회위원에 의해 선출된다.

(3) 간사(Secretary)는 언론그래픽국의 국장이다.

(4) 평의회 위원은 언론사대표, 정부대표, 언론학, 기타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대표 등을 포함하여 25 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1 항에 규정된 평의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자협회 대표 8 인

(2) 신문발행인협회 대표 6 인

(3) 신문그래픽협회 대표 1 인

(4) 광고협회 대표 1 인

(5) 정부대표 5 인

(6) 사회계 대표 4 인

제 6 조

1. 언론사를 대표하는 평의회 위원은 앞서 언급한 기자협회, 신문발행인협회, 신문그래픽협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광고협회의 구성원에 의해 그 구성원 가운데서 선출된다.

2. 정부를 대표하는 평의회위원은 국가 언론의 발전과 성장에 직무상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정부기관에서 선출된다.

3. 사회계를 대표하는 평의회위원은 언론학 및 기타 학문분야에서 그들의 전문성과 지식이 국가 언론의 발전에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 가운데서 선출한다.

4. 3 항에 규정된 전문가 대표의 선출과 선임은 앞서 언급한 언론협회 (Press Organization)의 추천에 의해 공보장관이 결정한다.

제 7 조

1. 평의회 임무를 효과적이고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7 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평의회 부위원장
- (2) 집행위원회 간사인 평의회 간사
- (3) 5 명의 선출된 위원과 지방 정기간행물을 대표하는 1 인

2. 신문평의회 간사는 공보부의 언론그래픽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 7 조 2 항에 명시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론그래픽국내에 평의회에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 (1)항에 규정된 기구의 업무, 기능, 조직체계 및 그 운용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공보장관이 정한다.

제 9 조

1. 신문평의회는 그 임무, 기능,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지식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다룰 경우평의회는 평의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임기 및 자격

제 10 조

1.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공보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한다. 평의회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평의회 위원의 임명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각각의 언론협회는 각 협회에게 할당된 전체 후보자의 2 배수를 선임하여 공보장관에게 제출한다.

(2) 공보장관은 정부를 대표하는 평의회 위원을 임명할 경우 정부의 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각각의 언론협회는 공보장관에게 사회계를 대표하는 최대 4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공보장관은 언론협회, 정부, 사회계를 대표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평의회 위원을 선임하며, 이 경우 공식적인 임명과 취임을 위해서는 전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

1. 신문평의회 위원의 자격은,

- (1)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이며,
- (2) 판차실러를 신뢰하고, 국가목표에 대한 반역행위에 관계되지 않아야 하며,
- (3) 언론법 제 2, 3 조에 규정된 언론의 지위와 기능, 임무를 완전히 이해하며,

(4) 숙련과 경험, 교육, 선한 도덕적 행위와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2. 신문평의회를 대표하는 언론협회와 정부의 비행정기관(Non-Ministerial Agency) 의장은 공보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평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임명취소를 건의할 수 있고, 법규범, 윤리, 그리고 언론을 지배하는 통념에 따른 충분한 이유와 고려에 의해 임명이 취소된 위원의 재선임을 건의할 수 있다.

3. 공보장관은 언론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임기 만료 전에 사회계를 대표하는 평의회위원의 임명취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절차

제 12 조 운영 절차는 평의회 의장인 공보장관에 의해 결정된 절차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정

제 13 조 평의회 경비는 공보부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 6 장 부칙

제 14 조 정부규칙의 법률조항 (The Enactmen of Government Reguration)에 따라 1971 년 대통령령 7 호에 의해 임명된 평의회 위원은이 법령에 의해 새 평의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자격이 인정된다.

제 15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법령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가신문(The State Gazette)에 이의 공포를 명한다.

1984 年 1 월 9 일 JAKARTA 에서 공포

IV. 인도네시아 언론법

제 1 장 일반규칙

제 1 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은 인쇄소, 사진시설, 형판기계 및 기타 기술적인 수단과 같은 자체 시설을 보유하건, 안하건 간에, 정기적으로 간행되며, 대량전달의 공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제도이며 혁명 도구이다.

2. 언론기업이라 함은 제 1 조 6, 7, 8 항에 규정 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및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저널리즘은 신문, 라디오, TV, 영화 등에 사실, 의견, 논평, 사진 그리고 기타 정보를 발표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 편집하며, 합법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뜻한다.

4. 기자라 함은 제 1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언론협회는 기자협회, 신문협회, 신문그래픽 기업협회, 정부에 의해 승인된 광고협회 등이다.

6. 통신사는 일간지, 정기간행물, 라디오와 TV, 정부기관, 기타 공사기관을 위하여 뉴스와 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기관이며, 인도네시아사회와 세계정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급한다.

7. 일간지라 함은 매일 또는 일주일에 6일간 발행되는 출판물을 말한다.

8.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적어도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말한다.

9. 정부신문이나 정부의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부가 발행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0. 이 법에서 정부라 함은 1967년 법률 4호에 의해 수정된 1966년 법률 제 11호의 제 1조 6항, 9항 제 2조 3항, 제 6조 2, 3, 5항 제 9조 2, 3항 제 10조 2항, 제 12조 1항과, 언론의 기본규정에 관한 법률 제 2차 수정법을 제외하고는 공보장관을 의미한다. 반면 제 13조 6항에서의 정부라 함은 공보장관과 상공장관을 의미한다.

제 2장 언론의 임무, 기능, 권리 및 의무

제 2조

1. 국가언론은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자극, 고무하며, 인도네시아 사회생활의 전반을 보도하며, 적극적이며,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교육적이고 정보전달적인 대중매체들로 구성되는 혁명도구 (An Znsfrument of Revolution) 이다.

2. 국가언론은 다음의 임무와 의무를 갖는다.

(1) 판차실러 (1945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헌법의 건국 5원칙)의 실현과 이행을 위한 지침을 통하여, 1945년 헌법 전문에 명시된 판차실러를 유지하고 대중화하며,

(2) 판차실러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3) 책임있는 언론자유에 기초하여 진리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며,

(4)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며, 책임감과 국가질서를 고양하여, 국가적인 정보와 국가발전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데 조력하며,

(5) 국가이익과 국가적 자신감에 기초하여 국가적, 국내적,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국제정보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국가발전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범위내에서, 언론은 객관적 정보의 확산자, 국민열망의 통로, 국가내에서의 전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도구, 건설적인 사회통제 수단 등의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언론, 사회간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

제 3조 언론은 건설적인 면에서의 통제 비판, 교정의 권리를 갖는다.

제 4조 국가언론은 검열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제 5조

1.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2. 이러한 언론자유는 국가가 보장하며, 이는 동법 제 2, 3조 실현의 기초가 된다.

제 3 장 신문평의회

제 6 조

1. 국가 언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평의회를 둔다.
2. 신문평의회위원은 언론협회대표, 정부대표, 언론학 기타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전문가인사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3. 신문평의회 지위, 임무, 기능, 권한, 위원의 수와, 지위, 자격 그리고 임명은 정부규칙에 의한다.
4. 언론학과, 기타 다른 학문분야에서의 전문가는 언론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임명한다.
5. 정부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평의회 관련 조항은 신문평의회 의견 수렴하여 공보장관이 정한다.

제 7 조

1. 신문평의회 의장은 공보장관이다.
2. 신문평의회 상임위원은 신문평의회 위원에 의해 위원중에서 선출된다.

제 4 장 출판의 권리와 언론 시설

제 8 조

1. 모든 국민은 판차실러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타인과 함께 신문을 발행할 권리와 신문사를 경영할 권리가 있다.
2. 출판허가는 필요치 않다.

제 9 조

1. 국내외의 뉴스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언론기관은 공동으로 통신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정부는 통신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통신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규정에 의한다.

제 10 조

1. 정부는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모든 외국어로 각 한개의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
2.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부간행물은 중앙 각부와 비행정적 정부기관과 공보장관 통제하의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제 11 조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견제하며, 판차실러에 반하는 신문발행은 금지 한다.

제 12 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언론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에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언론기업

제 13 조

1. 신문발행은 헌법 제 33 조의 조항에 따라 상호협력의 방식 또는 가족적 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등, 이상적 특성을 지닌 법인체에 의한다.
2. 언론기업의 자본은 국민의 것이며 언론기업의 창업자와 이사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3. 언론기업은 신문평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정부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어떤 단체로부터 서비스, 원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줄 수도 없다.
4. 언론기업은 언론협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5. 모든 출판물에는 언론출판업허가증이 필요하다. 언론출판업허가증에 관한 규정은 신문평의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정한다.
6. 광고매체는 언론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자원요소의 하나다. 광고매체에 관련된 조항은 신문평의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정한다.

제 14 조

1. 언론기업의 경영진은 집행부, 편집부, 경영부 등이다.
2. 1 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업의 경영부는 물론 집행부, 편집부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관차실러 반대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3. 언론기업의 경영과 조직은 전체적으로 행정적, 기술적 부문의 고용인과 기타 다른 고용인들과의 사이에 가족적 특성을 갖는다.
4. 집행부, 편집부, 경영부의 장은 동법 제 2, 3 조에 규정된 언론의 지위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 자이어야 한다.
5. 집행부, 편집부, 경영부 장의 기타 자격 요건은 정부와 신문평의회 의 합의에 의해 규정한다.

제 15 조

1. 집행부의 장은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의 전체적인 홍보를 책임진다.
2. 집행부장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편집부, 경영부의 장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3. 편집부의 장은 발행업무에 책임을 지며, 반론과 정정권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4. 편집부의 장은 특정기사에 관한 법적 책임을 편집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관련된 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5. 법적으로 문제가 된 기사의 해명에 있어서 집행부의 장, 편집부의 장, 편집부 구성원 그리고 필자는 거부권을 갖는다.
6. 그들의 직업활동 중 지득한 정보원의 이름, 지위, 주소 등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은 거부권을 갖는다.
7. 거부권에 관한 규정은 신문평의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정한다.
 - a) 반론권은 한 개 또는 몇 개의 출판물 기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개인, 단체, 기업체가 갖는 권리로서, 출판되어 배포된 기사에 대한 설명과 반론을 해당 간행물에 게재할 것을 해당 발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b) 바람직한 한도내에서 언론출판물은 반론권을 행사하는 지역사회독자들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 c) 반론권에 관한 제반규정은 신문평의회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정한다.

제 6 장 언론인

제 16 조

1. 언론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a) 인도네시아 국민인 자
 - b) 동법 제 2, 3 조에 규정된 언론의 지위, 기능,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며,
 - c) 판차실러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목표에 반하지 않으며,
 - d) 숙련, 경험, 교육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2. 언론인에 관한 기타 제반규정은 정부와 신문평의회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 7 장 외국언론과 언론인

제 17 조

1.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 언론사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정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국언론에 의해 발행된 출판물은 인도네시아에 배포할 수 있다.
3.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와 인도네시아 국민목표에 반하거나 위협하는 외국언론출판물의 국내 유입과 배포를 금지한다.
4.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언론에 관한 기타 제반규정은 정부와 신문평의회 협의에 의해 규제된다.
5. 외국통신사는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 설립될 수 있다.
6.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통신사와 외국출판물은 정부와 신문평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외국언론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 a) 국내에서 언론사를 대표하며
 - b) 인도네시아 국가목표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 c)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문평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 언론인에 관한 기타 제반규정은 정부와 신문평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장 처벌규정

제 19 조

1. 1967년 법률 제 4 호에 의해 수정된 1966년 법률 제 11 호의 제 2 조, 제 3 조와 언론의 기본규정에 관한 법률 2 차 수정안에 명시된 언론의 의무와 기능,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또는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신문을 발행한 자는 누구든지 최고징역 4 년에 처하거나, 최고 40,000,000,000 RP 의 벌금에 처한다.
2. 1967년 법률 제 4 호에 의해 수정된 1966년 법률 제 11 호의 제 13 조 5 항과, 언론에 관한 기본조항에 관한 법률 제 2 차 수정안에 명시된 신문출판업허가증이 없이

신문을 발행한 자는 최고 3 개월의 금고형 이나, 최고 10,000,000,000 RP 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9 장 이행규칙

제 20 조

1. 이 법안이 법률로 통과되기 전에 시행된 국가언론에 대한 정부지원은 새 규칙이 제정될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2. 1967 년 법률 제 4 호에 의해 수정된 1966 년 법률 제 11 호의 이행과, '언론에 관한 기본규정' 에 관계된 제 2 차 수정안을 위한 법률규정은 가능한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

3.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언론기업은 1967 년 법률 제 4 호에 의해 수정된 1966 년 법률 제 11 호의 제 20 조 2 항과 '언론에 관한 기본규정'에 관한 제 2 차 수정안에 언급된 미이행의 법률 규정의 발표 후 6 개월 이내에 기존 법률에 의한 그들 기업의 형태, 경영, 구조를 조정해야 하며, 정부와 신문평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4.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이미 적어도 3 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격을 인정한다.

5. 이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와 신문평의회 합의에 의해 규정된다.

제 10 장 부칙

제 21 조

1. 이 법은 언론의 기본조항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2.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회보, 일간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등이 공공의 안정을 저해하는 내용의 출판을 예방하기 위한 1963 년 대통령령 제 3 호에 규정된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3.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정부기관지에 그것의 공포를 게재할 것을 명한다.